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행정상 강제 규정 정비〉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35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정훈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0.
3. 회부연월일 : 2024. 9.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① ~ ③ (생 략)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처분 및 절차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¹⁾ 제정되어 시행 중인바,²⁾

1) 「행정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률 제17979호, 2021.3.23. 공포, 2023.3.24. 시행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을 따라야 하므로,³⁾ 「행정기본법」이 규율하는 사항을 개별법에서 별도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행정상 강제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30조⁴⁾는 행정청이 행정목

3)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지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3. 직접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4. 강제징수: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5.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하는 것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②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정상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종류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및 즉시강제를 규정하고 있음.

현행 학원법 제19조⁵⁾는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등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을 중지시킬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무부과와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직접강제⁶⁾에 해당함.

따라서 직접강제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이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학원법의 내용을 개정안과 같이

-
- 5) **학원법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 등록 사항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3. 제17조에 따라 교습의 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4.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원이나 교습소의 폐쇄 또는 교습 등의 중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6) 이외에도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출입국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직접강제를 규정하고 있음.
- ※ 위반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불법 입국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무단침입자나 불법시설물의 강제퇴거 및 강제철거,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집회자에 대한 강제해산, 강제예방접종 등

자신이 직접강제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32조⁷⁾를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의가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

-
- 7) 「행정기본법」 제32조(직접강제)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직접강제의 예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